

법원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선발예정인원

※ 선발예정인원은 추후(2026년 3월 경) 공고 예정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인성검사/면접시험

나. 시험과목

구분	제1·2차 시험(선택형 필기)
법원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전산직렬	국어,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직렬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개론, 정보학개론

※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하며, 전산직렬의 과목별 배점비율은 국어(30%), 한국사(30%), 영어(40%), 컴퓨터일반(50%), 정보보호론(50%)이며, 사서직렬의 과목별 배점비율은 국어(30%), 한국사(30%), 영어(40%), 자료조직개론(50%), 정보학개론(50%)입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구분	내용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8. 12. 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학력·경력	○ 제한 없음

※ 응시결격사유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

나. 사서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사항

- 준사서 이상(1·2급 정사서, 준사서)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구분	내용
장애인 구분모집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

대상자)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1·2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3. 16. ~ 3. 27. (취소마감일 : 3. 30.)	제1·2차 시험	5. 29.(금)	6. 20.(토)	7. 10.(금)
	인성검사	7. 10.(금)	7. 14.(화)	7. 27.(월)
	제3차(일반면접) 시험 (전산·사서)		7. 21.(화)	
	제3차(심층면접) 시험 (전산·사서)		7. 22.(수)	
	제3차(일반면접) 시험 (법원·등기사무)		7. 31.(금)	8. 7.(금)
	제3차(심층면접) 시험 (법원·등기사무)		8. 4.(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공고·합격자 발표·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http://exam.scourt.go.kr>)에 공고·게시합니다.

※ 제3차(면접)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 시 제3차(면접) 시험 응시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3차 면접 시험 중 일반면접 시험은 제1·2차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심층면접 시험은 일반면접 시험 응시자 중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cm×4.5cm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cm×4.5cm)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응시번호, 이름, 생년월일, 면제사유를 기재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메일(scourtexam@scourt.go.kr) 송부

- 신청기간 : 2026. 4. 6.(월) 09:00 ~ 4. 10.(금) 18:00

- 제출서류 : 각 해당사실 증명서 사본(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사본

○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도 접수 가능)

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 장애인 등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진단서 등]를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일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유형별(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의 별도 안내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분모집 응시자의 응시지역은 근무예정지역*과 관계없이 선택가능

* 근무예정지역의 경우 법원사무직렬 지역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해 선택 가능하며, 근무 예정지역을 '대전·청주'를 선택하였어도 응시지역(시험장소)은 '서울'로 선택하여 서울지역 시험장에서 시험응시 가능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모집구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취소마감일까지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의 '원서접수내역'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구분모집 제도

- 2025년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법원사무직렬에 한하여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선발하는 방식인 지역구분모집 제도를 도입하여 종전 전국 단위 선발 방식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지역구분모집 제도 적용 제외).

나. 지역구분모집 적용 지역

- 지역구분모집의 적용 지역은 춘천지방법원 관내, 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 대구지방법원 관내,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 제주지방법원 관내 등 총 6개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수도권은 전국 단위로만 선발하며, 제주 지역의 경우에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내로서 소수인 경우 필요에 따라 전국 단위로만 선발)

다. 지역구분모집 관련 안내

- 응시자격으로 근무예정지역에서의 일정기간 거주요건은 두지 않습니다.
- 합격자의 결정은 근무예정지역별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방법은 현행과 같이 법원공무원규칙 제12조에 따릅니다.
- 최종합격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근무예정 지역별로 구분된 채용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차례로 해당 지역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됩니다.
- 지역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경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다만, 승진임용 및 강임,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변경으로 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권역별 선발예정인원은 2026년 3월 경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7 준수서 등 자격증 사본 제출(사서직렬에 한함)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서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준수서 이상의 자격증 사본을 제1·2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은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등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 5% /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해당여부와 가점비율은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 확인 :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 등(☎1577-0606)

※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 확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의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

구 분	내 용
가산대상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가산비율(%)	5.0

○ 전산직렬의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

- 가산대상 자격증

구 분	내 용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통신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가산비율

구 분	내 용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0	3.0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2차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아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의사상자 등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제1·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할 목적으로, 가산특전과 관련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산특전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가.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2026. 6. 20.)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2026. 4. 30.)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임용됩니다.
- 마. 응시자격 여부 판단, 합격 결정 및 기타 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 전까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 공고합니다.
- 아.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 02-3480-1769
 -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